제 2 장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 2.1 사업계획 변경내용
- 2.2 환경영향평가 기 협의내용 변경사항

제 2 장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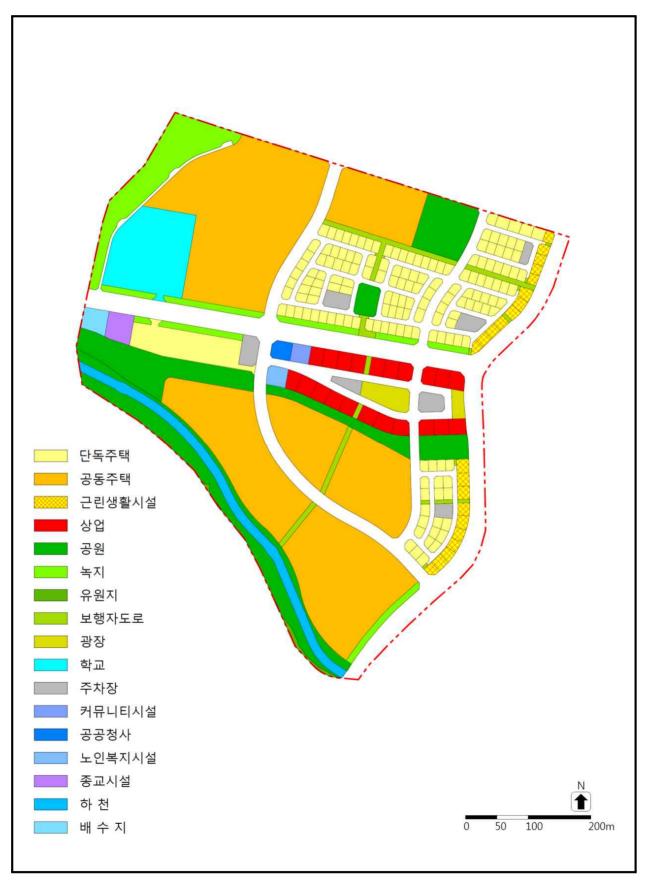
2.1 사업계획 변경내용

2.1.1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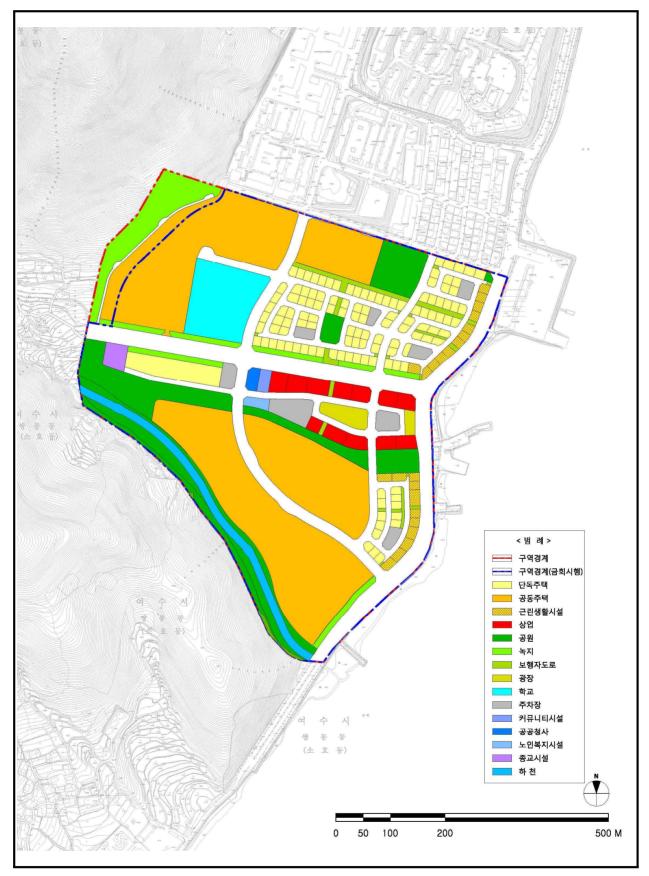
		면적(m²)							
	구 분		환경영향평가시	숭인시	금회변경	증·감	금회시행	증·감	비고
			1	2	3	(3 - 1)	4	(4 - 1)	
	합 계		417,654	417,654	417,654	_	395,866	▼ (21,788)	
	주거시	시설용지	195,552	193,901	185,452	▼ (10,100)	178,858	▼ (16,694)	
	공등	동주택	140,627	138,976	139,264	▼ (1,363)	132,670	▼ (7,957)	
	단독	필지형	39,307	39,307	32,113	▼ (7,194)	32,113	▼ (7,194)	
	주택	블록형	8,329	8,329	6,239	▼ (2,090)	6,239	▼ (2,090)	
	근린서	생활시설	7,289	7,289	7,836	▲ 547	7,836	▲ 547	
	상업시	시설용지	13,769	13,769	12,068	▼ (1,701)	12,068	▼ (1,701)	
	공공시	시설용지	206,472	208,133	218,273	▲ 11,801	200,416	▼ (4,047)	
	Ţ	도로	90,897	92,395	99,473	▲ 8,576	97,915	▲ 7,018	
	보행	자도로	6,470	6,470	5,581	▼ (889)	5,581	▼ (889)	
	Į.	강장	3,471	3,471	3,662	▲ 191	3,662	1 91	
	- 3	공원	46,757	48,238	49,410	▲ 2,653	49,410	△ 2,653	
	Ĵ	두지	21,799	21,951	21,982	▲ 183	8,346	▼ (13,453)	
	č	하천	9,466	9,466	9,466	_	9,466	_	
	유	·원지	670	670	(654)	▼ (16)	(654)	▼ (16)	
	ਟੁੱ	학교	16,256	16,256	16,256	_	16,256	_	
	주	·차장	6,464	6,464	9,780	▲ 3,316	9,780	▲ 3,316	
	공공	공청사	908	908	897	▼ (11)	897	▼ (11)	
	커뮤니	니티시설	870	870	889	1 9	889	1 9	
	노인부	콕지시설	974	974	877	▼ (97)	877	▼ (97)	
	배	수지	1,470	_	_	▼ (1,470)	_	▼ (1,470)	
	지원/	시설용지	1,861	1,851	1,861	_	1,861	_	
	종교	교시설	1,861	1,851	1,861	_	1,861	_	

주1) ② 승인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 소제지구 택지조성공사(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0—227호) 주2) 금회 변경 사유: 2018년 제8회 및 2023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소제지구 택지 개발사업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

주3) 금회 시행면적은 국가산업단지 구역계와 개발계획 구역계 불일치에 따른 공원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오류 발생으로 금회 실시계획에서 제외하여 추진하고, 추후 구역계 변경 후 잔여구간 개발(실시)계획 변경 추진



〈그림 2.1 - 1〉 토지이용계획도(환경영향평가시)



〈그림 2.1 - 2〉 토지이용계획도(금회 변경)

2.1.2 개발계획 변경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 사업규모: 417,654 m²

■ 주요시설: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 협의완료일 : 2019년 01월 09일

나. 승인시

■ 사업규모 : 417.654m² (변경없음)

■ 주요시설 : 주거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변경없음)

■ 승인일 : 2020년 06월 25일(전라남도 여수시 고시 제2020-227호)

다. 금회변경

■ 사업규모: 417,654m²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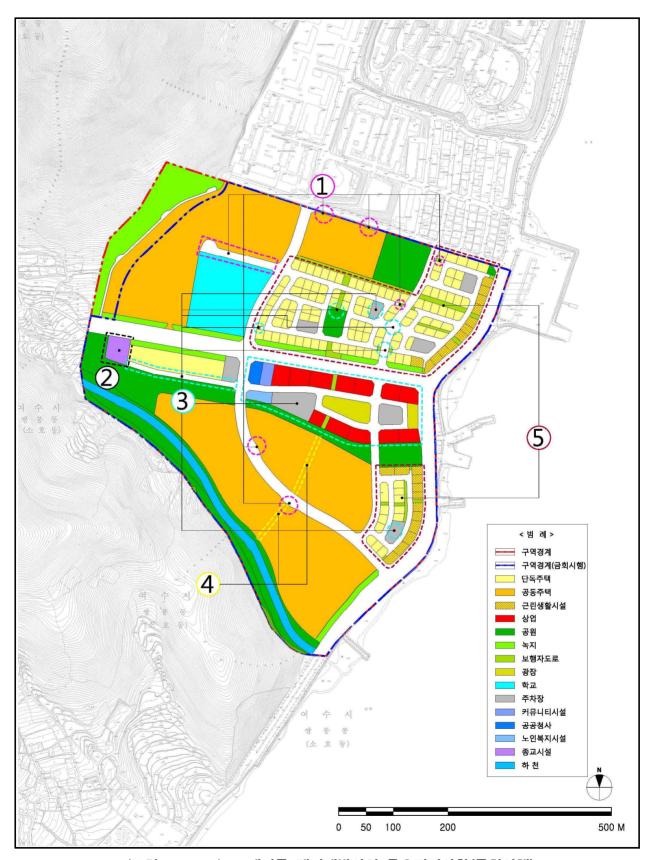
■ 주요변경사항

-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2023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의견 반영)
- 종교시설 용지 변경(수변 공원선형 일부 변경에 따른 종교시설 면적 변경)
-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2018년 제8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보완내용 반영)
- 공동주택 변경(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 점포 근생시설 면적 변경(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요구사항 반영)
- 토지이용계획 변경율 : 13.37%

1) 주요 변경내용(환경영향평가시 → 금회)

■ 2018년 제8회 및 2023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

구 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유	세부변경내용	비고
1	가속차로,	■2023년 교통영 향평가 변경심 의 의견 반영	 학교 진입도로 반영 폭원(B): 10m → 14m 회전교차로 반영 공동주택 2블럭 가속차로 및 버스베이 반영 공동주택 3,4블럭 버스베이 위치변경 단독주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보행자도로 축소 	교통영향 평가의견 반영
2	종교시설 용지 변경		■종교시설 면적 변경 - 1,851㎡ → 1,861㎡, 증) 10㎡	선형 및 면적 변경
3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2018년 제8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보 완내용 반영	뮤니티. 노인복지시설 변경	교통영향 평가의견
4	공동주택 변경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 보행자도로 삭제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 및 평형변경 - A1(60㎡~85㎡, 85㎡초과), A2(60㎡~85㎡) 변경없음 - A3(60㎡~85㎡)+A5(60㎡이하) = A3(60㎡~85㎡) m², 85㎡초과) - A4(60㎡~85㎡)+A6(60㎡이하) = A4(60㎡~85㎡)	면적 변경
5	점포 근생시설 면적 변경	■소제지구 택지 개발사업 주민 요구사항 반영		선형 및 면적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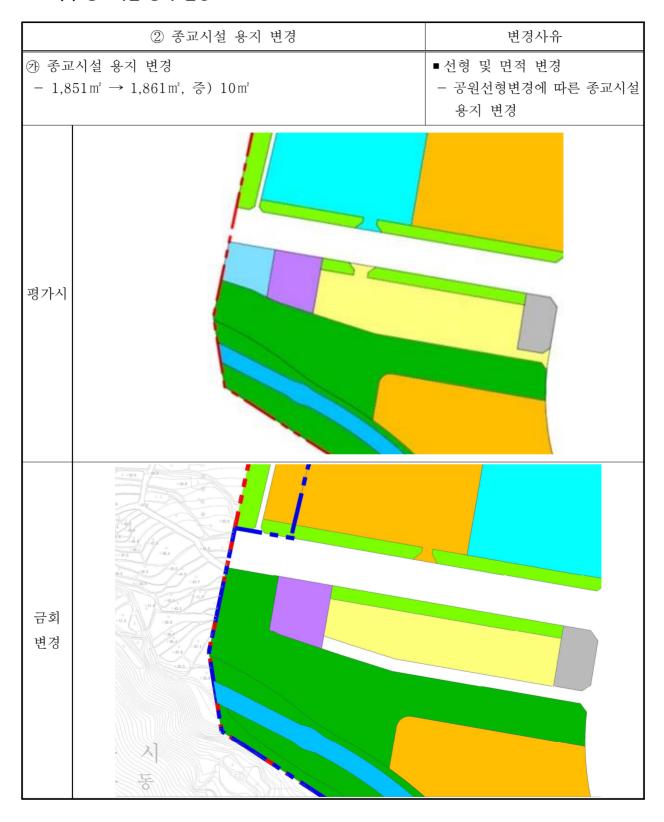
〈그림 2.1 - 3〉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요변경사항(금회시행)

가) 금회 실시계획(변경) 세부사항

(1)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

	① 학교진입도로, 가속차로, 버스베이 반영	변경사유
⑦ 학교	진입도로 반영	■선형 및 면적 변경
- 폭유	면(B) : 10m → 14m, 회전교차로 반영	- 2023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주택 2블럭 가속차로 및 버스베이 반영	의견 반영
	주택 3,4블럭 버스베이 위치변경	
● 단독	주택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보행자도로 축소	
평가시		
희 라 변		

(2) 종교시설 용지 변경



(3)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③ 가로망, 버스베이 등 반영 변경사유 ⑦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의견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반영 - 가로망·버스베이·보행자도로·주차장 변경 - 2018년 제8회 교통영향평가 심 - 가로망 변경에 따른 상업시설용지 변경 의의견 및 보완내용 반영 - 블록형 단독주택 진입도로 반영 ■주차장 부족문제 -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첵 공공청사(908m² → 897m², 감)11m²), 커뮤니티시설(870m² → 889m², 증)19m²), 수립 노인복지지시설(974m² → 877m², 감)97m²) (J) 상업지역 내 주차장 면적 변경 - 당초 775m² → 변경 3,069m² 증)2,294m² 평가시 금회 변경

(4) 공동주택 변경

	④ 공동주택 변경	변경사유				
■ 보행/	사도로 삭제에 따른 공동주택 면적 및 평형변경	■공동주택 부지 효율적 활용				
- A1	- A1(60㎡~85㎡, 85㎡초과), A2(60㎡~85㎡) 변경없음					
	60m²~85m²)+A5(60m²이항) = A3(60m²~85m², 85m²초과)					
- A4	$(60 \mathrm{m}^2 \sim 85 \mathrm{m}^2) + A6(60 \mathrm{m}^2 \mathrm{o})$ 하 $) = A4(60 \mathrm{m}^2 \sim 85 \mathrm{m}^2)$					
평가시	A1					
'화 '금 변	A1 A1 A3 A4					

(5) 점포주택·근생시설 면적 변경

	⑤ 점포주택·근생시설 면적 변경	변경사유
주민.	요구에 따른 점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선형 및 면적 변경
	드주택 변경 : 194㎡ ~ 294㎡ → 264.4㎡	-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요
- 근립	· 1. 생활시설 변경 : 260㎡ ~ 425㎡ → 297.6㎡, 396.7㎡	
평가시		
금 변경		

2.2 환경영향평가 기 협의내용(2019.01.19) 변경사항

혐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I. 총괄 ■ 본 사업은 전남 여수시 소호동 소제마을 일원에 여수국가산업단지 배후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지조성사업임	■ 변경없음.	_
■ 본 협의내용,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은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설 계 등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동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 적으로 감독·관리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사업시행자, 협의내용 이행주체 등이 바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등의 승계절차를 통해 협의내용 등이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변경없음.	_
■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실제상황과의 불일치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사업시행과정 및 저감효과 모니터링, 사후환경 영향조사결과 분석·평가, 제기된 민원사안 검 토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운영 	■ 변경없음.	_
- 지역주민 등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검토·조치하고,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민원 해결	■ 변경없음.	_
■ 사업 승인 전 상위·관련 행정계획,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한 후 사 업을 승인하겠음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Ⅱ. 세부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는 수달, 삵, 황조롱이, 소쩍새 등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확인된바, 사업 시행 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서식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 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정보호종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저감대책을 추가적으 로 마련·시행	■ 변경없음.	_
■ 법정보호종인 수달이 사업지구 서측의 소제천 일 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유로변 경에 따른 서식영향을 최소화하고 토사 유출 및 인간의 간섭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공사시기 조정(소제천 신설 유로 선시공·생태 복원 후 기존 유로 패쇄) 등을 통해 수달 회피 로 확보	■ 변경없음.	_
- 공사 시에는 소제천 양안(폭 50m 이내)에서의 야간 공사를 지양하고 강화된 토사유출 방지대책 실시	■ 변경없음.	_
- 소제천은 자연친환경적인 정비·복원계획* 수립· 시행 * 하천 상·하류부의 생태적 연속성 유지(보 최 소화), 하도 중앙부는 자갈·모래톱 등으로 조 성, 수생식물과 수변곤충 등의 서식공간 제 공, 하천 생태계 유지용수 확보, 완경사의 친 환경적 호안공법 적용 등	■ 변경없음.	_
- 소제천 양안 경계부에는 차폐용 밀식 식재를 실 시하고 수변공원 조성 시에는 공원시설물(산책로, 운동기구 등)을 최대한 이격 설치(최소 10m 이상)	■ 변경없음.	_
-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수달 보호 안내판 설치(최소 3개 지점 이상)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육상곤충류(공사 시 육상동물상)를 포함시키고 소제천의 수달, 육수 생물조사 및 수환경평가(BMI, ESB 등)를 추가 실시(공사 시 분기 1회-우기 시 월 1회 이상, 운영 시 분기 1회)하여야 함	■ 변경.	
■ 사업지구 인근에 잘피류 서식분포조사(월중 사리시)를 실시하고 잘피류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대체서식지 이식, 보식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이식개체 생육상태 확인등)을 수립·시행하여야함	■ 변경없음.	_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 ■ 사업지구 주변에는 정온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에는 기상여건 등과 연계하여 공사시기 및 강도를 조정·시행하고 주민의 민원 제기 시에는 살수차량 운영 확대, 진공흡수식 청소차량 운영 등 추가적인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사업지구는 정온시설, 도로, 산림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바, 전체 경계부에 방진망(막)을 설 치·운영	■ 변경없음.	_
■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방안(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설비 설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 및 지열 시설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저감방안별 이행시기,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다. 수질 및 해양환경 ■ 사업지구 하류수계인 가막만은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기준 수질목표(WQI) I 등급)이므로 공사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 화되도록 사업지구를 구획화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실시(공사기간, 일정 조정 등) 하고, 저 감방안을 철저히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배수구역별로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 운영하고, 침사지의 저감효율(8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준설·관리 ※ 침사지의 규모는 물리적으로 침전이 가능 한 세립질 토사 입경인 0.0625㎜를 최소한 의 포착 대상입경으로 선정하여 설계	■ 변경없음.	_
- 이중 오탁방지막은 훼손 및 공극 패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교체(오탁방지막 내·외측 SS농도 모니터링)	■ 변경없음.	_
현장 부유사 확산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토사유출 영향 가중 시 침사지 용량 증대 등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	■ 변경없음.	
■ 운영시 발생오수(2,300㎡/일)는 여수공공하수 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인바, 사업 준공 전(입주 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관거 연결 등 을 완료하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본 사업은「물환경보전법」제5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2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원의 설치신 고 대상사업이므로 관련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여과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시에는 가급적 강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여재의 역세척을 실시하고 발생되는 세척폐수에 대해서는 별도 의 차집 및 처리계획 수립·시행	■ 변경없음.	_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이 증가하므로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저영향개발 (LID, Low Impact Development) 시설물 조성 계획 및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 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토지이용계획별 식생수로,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투수블럭, 침투저류지, 식생여과 대 등 시설물 종류, 위치, 용량(제원)을 반영결 과에 제시	■ 변경없음.	_

혐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공사 및 운영 시 유류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 변경없음.	
오일펜스 및 흡착제 등 방제장비 상시 구비 등	■ 记分联合,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필요 시 불투수성 증가 등으로 인한 홍수예방대		
책(영구저류지 등)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따		
른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태		
풍·해일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영향예측을 통해	■ 변경없음.	_
침수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태풍 동반 해일고 예측한 결과 최대 2m의		
해일고 예측		
■ 해양환경 조사지점 선정 시에는 대조구(가막만		
내·외해)를 선정하여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		
환경 영향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 변경없음.	_
최초 운영 시 1년간은 조사주기를 강화(반기 1		
회→분기 1회)하여야 함		
- 해양수질 조사 시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중 니		
켈(Ni)이 누락되어 있는 바, 동 항목에 대한 측	■ 변경없음.	-
정을 추가 실시		
- 해양저질 조사결과 유기물과 관련된 강열감량		
이 높은 수준(10.8~14.5%)인 바, 사후환경영	■ 변경없음.	_
향조사항목에 유기물 오염을 평가할 수 있는	2000	
항목(COD 등)도 포함		
라. 토지이용, 토질		
■ 본 사업의 사업특성(주거단지), 현재 생태면적률 등을		■ 생태면적률
고려하여 계획생태면적률을 40% 수준으로 상향하여	변경.	- 평가시 : 30.9%
설정하고 자연지반녹지 확보, 의무녹지율 상향조정,		- 금 회: 31.3% ((증) 0.4%)
공공건물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생태면적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옥토는 사업지구내		
에서 전량 재활용하고, 활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재활용률 제고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활용률,	■ 변경없음.	_
재활용 세부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C 0 M D.	
※ 비옥토 발생량 산정 시 비옥토 발생면적에		
서 답(논)은 제외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마. 지형·지질		
■ 사업지구 절·성토에 따른 사면 발생 구간은 토		
사유출, 사면붕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저감대책(사면	■ 변경없음.	_
보호공법 등)을 수립하고, 사면녹화 등을 통해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사업지구와 근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이 분포		
하고 있으므로 사전 공지, 의견수렴 등을 실시	- 버커어 0	
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 시 적정한 저감방	■ 변경없음.	_
안을 시행하여 소음·진동도가 환경목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심초등학교의 경우 공사 시행 전 학교관계자		
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저		
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사(발파 포함)기간	■ 변경없음.	_
중 자동소음측정기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목표기준 준수여부 관리		
■ 운영 시 도로교통소음에 의해 주거시설 및 학교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 변경없음.	_
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시설에 대한 도로소음 예측 시 적용한 교		
사내 소음보정치(-4.1dB(A))는 교육시설의 형		
상 및 배치, 도로소음 측정지점 등에 따라 변화	변경없음.	_
가능성이 있어 소음보정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COMP.	
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소음 예측·평		
가를 수행한 후 적절한 저감대책 마련·시행		
- 방음벽 설치 시에는 안정성 확보, 경관 고려(색		
채, 외장재료, 형태 등) 및 조류충돌방지대책	■ 변경없음.	_
(투명 방음벽 설치 시 맹금류 스티커 부착 등)		
마련		
- 지속적인 모니터링를 통해 필요 시에는 추가적	변경없음.	_
인 저감방안을 수립·시행	C O IM D ·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사. 위생·공중보건 ■ 본 사업지구는 대기환경특별대책지역내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추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해 주거단지로서의 적정성 확보 후 승인하여야 함 *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 참조 	■ 변경없음.	_
아. 경관 및 일조장해 ■ 사업지구는 산지경관과 해양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해상(항로) 조망점을 추가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 영향 저 감방안을 마련	■ 변경없음.	_
- 배후산지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 물 높이를 조정하고 통경축(바람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지배치계획 수립 및 오픈스페이스 공간 확보	■ 변경.	_
- 경관 변화 저감을 위해 주요 경관축 식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포장·공공디자인 적용, 경관 훼손을 야기하는 절·성토구간 등에 적절 한 녹화공법 적용	■ 변경없음.	_
 Ⅲ. 평가서에 반영된 항목별 저감방안 가. 동식물상상(평가서 220~232쪽, 282~284쪽) ■ 조류 인공둥지 설치(공원 3개소 내 : 총 20개소 설치), 먹이식물 조성 	■ 변경없음.	_
■ 생태측구 조성(사업지구 북측 : 11개소, 남서측 : 8개소)	■ 변경없음.	_
■ 미소서식처 조성(녹지 : 돌무더기 2개소, 공원 : 나무쌓기 2개소)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빛 공해 최소화를 위한 야간 조명 설치(나트륨 전 구 사용, 전등갓 설치, 차단형 가로등 설치 등)	■ 변경없음.	_
■ 야생동물 로드킬 방지 안내판 설치(도로변 1개소)	■ 변경없음.	_
■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방안 시행 - 하천 주변 수달 보호안내판 설치 및 수달 휴식 처(소제천 하류부: 1개소) 조성, 하천 내 야간 조명 직접 조사 방지, 단계별 공사 시행, 소형 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남획 금지	■ 변경없음.	_
■ 녹지축 및 수변축 형성	■ 변경없음.	_
<해양 동·식물상> ■ 토사유출 방지 대책 시행(침사지 및 2중 오탁방 지막 설치·운영 등)	■ 변경없음.	_
 나. 대기질(평가서 384~394쪽) 및 온실가스(평가서 408~415쪽) <공사시> ●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운영 	■ 변경없음.	_
■ 토사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 변경없음.	_
■ 토사적치장소는 주거지역에서 이격 및 방진덮 개 설치	■ 변경없음.	_
■ 가설방음판넬 상단 1m 방진망 병행 설치(필요 시 이동식 비산망진망 설치)	■ 변경없음.	_
■ 주진입도로 가포장, 살수 및 청소 실시	■ 변경없음.	_
■ 유지목표농도(환경기준 및 광양만권 대기환경 기준) 설정	■ 변경없음.	_
■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조치(현장 미세먼지 총괄 관리자 운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분 발령 시 비산먼지 과다 발생공사 전면 중지 등)	■ 변경없음.	_
■ 온실가스 저감대책 시행(건설기계 대형화, 고효 율 건설기계 사용, 공회전 최소화,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폐재 재활용 등)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운영시>	■ 변경없음.	_
■ 청정연료(LNG) 공급	■ COND.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치	■ 변경없음.	_
■ 공원 및 녹지 조성(68,556㎡), 도로변 및 녹지		■ 공원 및 녹지조성 면적
대 수목 식재	■ 변경.	- 평가시 : 68,556 m²
		- 금 회: 71,392m² ((증) 2,836m²)
■ 온실가스 저감대책 시행(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설비 설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신재생에너	■ 변경없음.	_
지시설 도입, 공원 및 녹지 조성 등)		
다. 수질(평가서 473~498쪽) 및 해양환경(평가서		
595~599쪽)		
<공사시>	2.2.2.4	_
■ 구간별 공사 시행, 비탈면 보호시설(거적, 비닐,	■ 변경없음.	
PE망 덮기) 설치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4개소), 이중오탁방지	2.2.2.4	
막(2개소) 설치·운영	■ 변경없음.	_
■ 현장사무소 발생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방류수 수질기준 강	■ 변경없음.	_
화(BOD 10mg/L, SS 10mg/L)		
<운영시>		
■ 용수는 둔덕정수장 및 신설 배수지를 통해 공급	■ 변경없음.	_
■ 분류식 우수처리, 오수(2,300㎡/일)는 여수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변경없음.	_
■ 공원 및 녹지 조성(68,556m²), 도로변 및 녹지		
대 수목 식재	■ 변경없음.	_
■ 여과형 비점오염처리시설(2개소) 설치, 저영향		
개발(LID)기법 적용	■ 변경없음.	_
라. 토지이용(평가서 631~632쪽) 및 토양(평가서		
644~649쪽)		
■ 계획생태면적률(30.9%) 이행	변경.	■ 생태면적률
		- 평가시 : 30.9%
		- 금 회: 31.3% ((증) 0.4%)
■ 지장물 철거 시 정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질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비옥토(약 29,158.2m³)은 보관 후 성토 시 사용	■ 변경없음.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시 토양오염방 지시설 및 누출방지시설 설치	■ 변경없음.	_
마. 지형·지질(평가서 680~684쪽)■ 비탈면 경사 적용(붕적토 1:2.0 이상) 및 옹벽 설치	■ 변경없음.	_
■ 비탈면 녹화공법 및 사면보호공법 적용	■ 변경없음.	_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평가서 706~716쪽) ■ (공사 시)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및 재활용(목표 99.0%), 폐유·폐석면·폐비닐·PCBs함유 폐기물 등 적법 처리 	■ 변경없음.	_
■ (운영 시) 생활폐기물(음식류폐기물류 포함) 여 수시 생활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변경없음.	_
사. 소음·진동(평가서 759~769쪽)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 설치 (2개소, H=5~6m, L=총1,080m)	■ 변경.	■ 환경보전방안검토 (기후생태과-14368(23.05.31) - 가설방음판넬 설치계획 변경 (2개소, H=3~6m, L=총 579m)
■ 장비 분산 투입(4대→2대)	■ 변경없음.	_
■ 이동식 방음벽 설치(안심초등학교 구간)	■ 변경없음.	_
■ 발파 시 시험발파 등을 통해 목표기준(주거시설 75dB(A), 학교 55dB(A)) 준수	■ 변경없음.	_
<운영시> ■ 환경영향평가시 설치계획 구분 저감대책(m) 환충녹지 추가이격 방음벽 교육시설 10.0 35.0 -] -]	■ 금회 : 방음벽, 저소음포장 - 저소음포장
단독주택 2 10.0 2.0 H=6m, L=구간별 70~160m 단독주택 3 10.0 2.0 H=6m, L=구간별 25~130m 공동주택 A-6 10.0 15.0 H=8~10m, L=구간별 80~200m	■ 변경.	· −3dB(A):내부도로 300m+52m 총 352m · −5dB(A):소호로 248m, 소호관/로 400m 총 648m
단독주택 4 - 2.0 H=6m, L=구간별 60m		

		협의 내 용		변경유무	변	경사항
아.	경관(평가서	801~814쪽) 및 일조장해(841~844쪽)		버권성수		
-	자연경관축	(녹지축, 하천축) 계획	•	변경없음.		_
-	건축물 배치] 및 층고(바람길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배치	및 층고계획
	서고동저의	건축물 높이 조성, 남북방향의 녹			- A3 25층, A	A5 10~15층
	지축 형성,	단지내 건축배치 지양구간 설정 및	•	변경.	\rightarrow A3+A5	합병, 15~25층 조정
	탑상형 배기	치 권장 등) 계획			- A4 20층, A	A6 15층
					\rightarrow A4+A6	합병, 25층 조정
•	배후 산림경	l관의 V자형 스카이라인과 산림경				
	관~해안경	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위한 서고	•	변경없음.		_
	동저형 스키	가이라인 계획				
•	색채경관, 기	·로경관, 공원 및 녹지계획, 비탈면	_	변경없음.		
	처리(녹화	등) 시행 등	-	乙′0 联百,		_
•	일조장해 저	감을 위한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및			■ 일조장해 저기	감을 위한 건축물 배
	층고(최고	18층 이하) 제한			치계획 수립	및 층고(최고 18층
					이하) 제한	등의 저감계획 수립
			•	변경없음.	필요	
					- 향후 건축물	에 대한 상세 설계시
					일조영향 수	인한도 기준일조시간
					확보를 만족	토록 할 계획임.
IV	. 사후환경영	병향조사 계획(평가서 요약)			■ 소제지구 택기	지개발사업 환경보전
•	조사기간 : 시	l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변경.	방안검토 협	[]] 의완료(기후생태과
•	항목별 세투	부조사계획			-14368)ース	l하수 조사지점 제외
	구 분	조사항목			:사지점	조사주기
		■ 식물상 및 식생				
		- 식물상 현황 및 변화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사업지	구와 주변지역	분기 1회
		■ 생태계교란야생식물		_ 1161717	지지지기하	연 3회
		- 조사시기별 분포현황		■ 사업시기	구와 주변지역	(춘/하/추계 각 1회)
	·상	■ 육상동물상 -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분포,	нìя	÷1		
	동 · 공사시	- 로ㅠㅠ, 장시·작동ㅠ, 조ㅠ 군도, 여부	진소		7 시 즈버키션	보기 1 회
스]물	- 법정보호종 현황 모니터링 및 추	가다	# 사업시 기	구와 주변지역	분기 1회
	상	책 필요여부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육수생물상				연 5회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분	모	■ 기어기	그이 즈버키션	(분기 1회,
		- 종구성의 변화여부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여부		■ ^f입시기	구와 주변지역	우기시[7,8월]
		- 저감방안 이행여부				월1회)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		
=	구 분	조사항목	3	스사지점	조사주기
		■ 식물상 및 식생 - 생태계교란생물 분포, 현황 모니 - 저감시설 설치여부 및 적정성		구와 주변지역	반기 1회
육상 동 · 식물 상	운영시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현황 모니터링 법정보호종 현황 모니터링 및 추책 필요여부 저감시설 설치여부 및 적정성 		구와 주변지역	반기 1회
		■ 육수생물상- 분류군별 현황 모니터링- 종구성의 변화여부- 저감시설 설치여부 및 적정성		구와 주변지역	반기 1회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어란 및 자치어	■ 4개 정 ²	점(ST-1~4)	
해양	공사시	■ 조하대 저서생물■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 3개 정 ²	점(T-1~3)	분기 1회
동		■ 어류 및 수산자원	■ 문헌조/	\ }	
· 식물 상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 동물플랑크톤 ■ 어란 및 자치어	■ 4정점(ST-1~4)	
	운영시	■ 조하대 저서생물■ 경성조간대 저서생물■ 연성조간대 저서생물	■ 3정점(¹	T-1~3)	반기 1회
		■ 어류 및 수산자원	■ 문헌조/	\ }	
) .)	■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 ₂	■ A-1~3		분기 1회 (3일연속) A-2 (최초1년 월1회)
대 기 질	공사시	■ 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 세륜측면살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기적 살수시행 여부 - 토사운반 차량 적재함에 덮개 사용	■사업시구	⁴ 내	분기 1회
	운영시	■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 ₂	■ A-1~6		반기 1회
		■ 완충녹지 및 조경계획	■사업지구	· 내	

협의 내용 변		변경	1경유무 변		경사항	
Ŧ	그 분	조사항목			스사지점	조사주기
		■ 공사장비의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여부■	사업지구	구 내	분기 1회
온실 가스	공사시	■ 공원녹지 조성여부 - 경관완충녹지 녹화공정현황 및 등 - 조경계획에 따른 수목 식재여		사업지구	구 내	연 3회 (3~10월)
	운영시	■ 경관·완충녹지 녹화현황	•	사업지구	7 내	연 2회 (4~10월)
		■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pH, BOD, COD, TOC, SS, T-P, 총대장균수(8항목)	DO,	사업지급 (W-1~	구 주변 수계 ·2)	분기 1회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 BOD, SS	치시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 지점	분기 1회 (가동초기 1년간, 월 1회)
	공사시	■ 침사지 유출수 상·하류 - pH, BOD, SS ■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오탁병 관리현황			유출수 상·하류 4)	분기 1회 (침사지 설치시~ 철거시)
수질 및 수리		■ 지하수질 현황조사 -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약 온, Cd, As, CN, Hg, 페놀, Pb,	크소에	현황 조 (GW-1		분기 1회
· 수문		■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 pH, BOD, COD, TOC, SS, T-P, 총대장균수(8항목)	DO,	(W-1,2)		반기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설치 및 유 리현황 점검	구지관 -	비점오인	^념 저감시설	
	운영시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유출수 수 사, BOD, SS	-질 조		염저감시설 유입 개시설 유입 전·후 소)	
		■ 지하수질 현황조사 -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약 온, Cd, As, CN, Hg, 페놀, Pb,		현황조시	-지점 (GW-1~2)	반기 1회
해양 환경	공사시	[해양수질] ■ 생활환경기준(3개항목) -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 해양생태계보호기준(8개항목) -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가), 수은, 니켈 ■ 수질평가지수(5개항목) - 저충산소포화도, Chl-a, 투명도, DIP	1롬(6	사업지구 (SW-1	구 주변해양 ∼4)	분기 1회
		[해양저질] ■ 해양환경기준(8개항목) - As, Cd, Cr, Cu, Hg, Ni, Pb,		사업지급 (SG-1~	구 주변해양 ∼4)	분기 1회

		협의 내용	변경위	우무	변 ²	경사항
Ť	구 분	조사항목		조	사지점	조사주기
해양 환경	운영시	[해양수질] ■ 생활환경기준(3개항목) -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 해양생태계보호기준(8개항목) -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가), 수은, 니켈 ■ 수질평가지수(5개항목) - 저층산소포화도, Chl-a, 투명도, DIP	1롬(6 (사업지구 SW-1~	· 주변해양 ~4)	반기 1회
		[해양저질] ■ 해양환경기준(8개항목) - As, Cd, Cr, Cu, Hg, Ni, Pb,		사업지구 [SG−1~	주변해양 4)	반기 1회
		■ 폐유보관시설 - BTEX, TPH, TCE, PCE ※ 설치시부터 철거시까지	I	폐유보관 [1지점)	시설 인접지점	33.3.2.2
토양	공사시	■ 저감방안 이행여부- 토양오염 저감방안 이행현황- 불법 매립폐기물 등 발견여부 및시 적정 처리현황	발견	공사구간		분기 1회
지형		■ 토사유출 방지대책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여부 - 세륜·세차시설 가동여부		사업지구 	· 	
-) -)	공사시	■ 깎기 및 쌓기지역의 비탈면 처리				분기 1회
지질		■ 연약지반 처리대책 이행여부 ■ 표토(비옥토) 임시적치장 - 비닐, 천막 등 상부피복여부		사업지구 표토보관	·	
친환 경적 자원 순환		■ 폐기물관련법규에 따른 적법한 인·허기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등 ■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및 간이 실 설치 및 수거처리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적정 여부 폐기물 보관 총괄표 작성	■ <i>/</i> 화장 처리	사업지구		분기 1회
	운영시	■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 /	사업지구		반기 1회
소음	공사시	■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주간) ■ 발파시 소음·진동 현황(주간) - 시험발파 결과 등 ■ 저감방안 이행여부	- 1	VV−1~5	5	분기 1회
진동	운영시	● 운영시 교통소음 현황─ 주·야간 소음─ 공동주택(1층 및 옥상)─ 단독주택(1층)	- 1	N-6 ~ 11		분기 1회
※ 협	의내용 중	수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된 사항	은 사후횐	·경영향	조사계획에 반영	하여 실시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V. 행정사항 1. 숭인기관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협의내용에 따 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변경없음.	_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미리 제출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거나 검토하려는 때에는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재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자가 사전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본 사업은「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제1 호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므로 동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일(인· 허가일·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함 - 아울러, 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련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생태계보전협력금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협의기관에게 통보하여야함	■ 변경없음.	
■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 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 음해 1월 31일까지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2.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협의기관의 장에게 조정 요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변경없음.	_
■ 본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법 제32 조 및 제33조에 따라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조부터 제29 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조정의 절 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 행하여서는 안됨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현 장에는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협의내 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이 를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코자 할 때 에는 승인기관 및 우리 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등과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우리 청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변경없음.	_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 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통보하여야 함 -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후환경영 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8-50호, '18.3.30.)호」에 따라 작성·제출	■ 변경없음.	_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평가 시부터 사후조사 시의 최초부터 당해기간까지 전 기 간의 시계열 조사결과를 수록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한 변화 추이 등이 잘 나 타날 수 있도록 표, 그래프, 도면 등과 같은 정량적인 형식과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당 초에 협의된 저감방안과 보전대책이 적정하 게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추가대책 수립 필요성 여부 및 그 내용 등이 통보서에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변경없음.	_

협의 내용	변경유무	변경사항
■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변경없음.	_
지체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우리청에 통보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동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		
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		
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	■ 변경없음.	_
부터 30일 이내 영산강유역환경청(수생태관리		
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